

4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

1. 기존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

가. 1기

- ① 지방법원 경력대등부 확대 필요성 및 바람직한 운영 방향
- ②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의 증거분리제출 시행방안
- ③ 외국인의 체포·구속 시 영사통보 개선방안
- ④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나. 2기

- ① 영상재판 확대 여부 및 방안
- ② 구속영장단계 조건부석방제도 도입 문제
- ③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실무 개선방안

다. 3기

- ① 소액심판제도 충실화 방안
- ②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검증 및 감정 제도 개선 방안
- ③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위한 양형심리 절차의 개선 방안

2. 제4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회부 예상 안건 ☞ 바람직한 판결서 작성 방안

■ 논의의 필요성

- 법조일원화제도가 도입(2013. 1. 1. 시행)되면서 풍부한 사회적 경험을 갖춘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됨에 따라 법원의 인적 구성이 변화되고 있음. 이에 법관의 업무에 있어서도 상세한 판결서 작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법정에서의 충실한 재판을 통하여 소송관계인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있음
- 현재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판결문 작성방식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 중이고, 2023년 상반기에는 연구성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됨

-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민 81-6)」에 일정 범위의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조항이 삽입될 예정인 바, 실무에서 소액판결서 이유 기재 방식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음
 - 3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위 문제를 인식하고 ‘소액심판제도 충실화 방안’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소액사건 판결서에 적합한 양식을 제시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ex. 체크식 판결서), 촉박한 일정 등으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였음
- 민·형사판결서 작성 방식에 관한 재판예규가 제정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는 바, 그간의 실무관행 변화를 고려하여 재판예규를 제·개정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음
 - 판결서 작성 방식에 관한 예규에는 「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을 위한 참고사항(재판예규 제316호)」, 「판결서 작성방식에 관한 권장사항(재판예규 제625-1호)」,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가 존재함
 - 특히, 민사판결서의 경우에는 「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을 위한 참고사항(재판예규 제316호)」, 「판결서 작성방식에 관한 권장사항(재판예규 제625-1호)」만이 적용되는데, 이는 각각 1991년과 1998년에 제정된 재판예규로, 제정된 지 20년 이상이 경과하였음

■ 기존 논의 경과 소개

- 1991년, 1998년 예규 제정을 통한 판결서 개선 작업
-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
 - 판결서 이유 기재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주장,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전부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하였음(‘전부’라는 표현을 삭제)
 - 무변론, 자백간주, 공시송달 사건 판결에 대해서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상계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2006년 10월 서울중앙지법 판결서 개선 위원회 구성·운영
 - ‘판결서 개선 사례집’ 발간
- 2007년 코트넷에 간이화 판결례를 등록하는 작업 실시
- 2010년 7월 판결서 간결화 연구반 구성·운영
 - ‘간결한 판결 사례집(민사)’, ‘간결한 판결 사례집(형사)’ 발간
- 2012년 6월 서울중앙지법 판결서 작성방식 개선 소위원회 구성·운영

- 2014년 7월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 제정
 - 유죄판결 이유의 적정화를 주된 대상으로 함
- 2015년 민사판결서 작성 개선사업 기초검토 TFT 구성·운영
- 2022년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판결문 작성’ 연구 중

■ 안건 회부 시 구체적인 연구·검토 필요 사항

- 바람직한 판결서의 작성 방안에 관한 논의
 -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판결문 작성방식 개선방안’에 관한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가 2023년 상반기에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
 - 다양한 판결례, 판결문 샘플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법관의 판결서 작성에 관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국민이 알기 쉽고 답변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판결서 양식, 법조일원화 및 전자소송 시대에 걸맞은 판결문 양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적절한 소액사건 판결서 양식 발굴 및 공유
 - 개정 예정인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민 81-6)」에서는 일정 범위의 소액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를 권장하는 취지의 조항이 삽입될 예정임
 - 소액사건의 처리에 저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답변 기능을 갖춘 다양한 판결서 양식에 대하여 논의한 후, 그 결과를 공유할 필요 있음
- 예규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연구·검토
 - 민·형사판결서 작성 방식을 규율하는 예규가 존재하는데, 특히 민사판결서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관련 예규가 제정된 지 20년 이상이 경과하였음
 - 예규 제정 이후 바람직한 판결서 작성 방안에 관한 법원의 연구가 상당량 누적되었는바, 이에 따를 때 예규 내용이 현행 실무와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새로 규율할 부분은 없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적절한 소액사건 판결서 양식에 관한 내용 역시 예규로 정할 부분은 없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4기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

1. 기존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

가. 제1기

- ① 전문법원 추가 설치 여부 및 우선 순위
- ②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 개선방안

나. 제2기

- ① 전문법관 확대 방안
- ② 민사재판 1심의 단독관할 확대 방안

다. 제3기

- ① 항소심 재판 제도 개선
- ②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사법접근성 강화 방안

2. 제4기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회부 예상 안건

가. ① 법관 사무분담기간 장기화 방안

- ▣ 제22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서경환 위원이 제안한 내용(별도 자료) 참조

나. ② 사법의 투명성과 개방성 확보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 방안

1) 개요

- 국민이 법원과 재판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될수록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더 높아질 수 있음(과거 법원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반국민의 신뢰도보다 법원이용객의 신뢰도가 더 높게 나타났음)
- 법원 및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여 사법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하면서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 ① 재판중계의 확대, ② 정보 제공의 확대, ③ 법교육 강화 방안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세부 논의 항목 예시

■ ① 재판중계의 확대

● 논의 필요성

- 재판의 진행과정을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하면 국민들의 사법제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 또한 판결형성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참여를 통해 법원으로 하여금 변화된 사회적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법을 사회적 필요에 적합하게 발전시킬 수도 있음(김재운, 독일과 한국의 공개주의와 그 제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공개주의의 확대로서 TV공개주의에 관한 최근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21호)
- 재판중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물적 기반이 확대되기도 하였음
 - 2021년 소송법 개정으로 영상재판 확대 실시와 관련하여 민사소송규칙에 ‘인터넷 중계’ 근거 규정 신설 ⇨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 제2항 후문에 따른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의 하나로, 영상재판의 인터넷 중계를 공개 방법에 포함
 - 2022년 6월 사법영상포털인 「법원TV」 오픈
- 2022년 7월 사법부 내에 재판중계연구반이 구성되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관련 쟁점 검토, 영상재판 인터넷 중계를 위한 세부 규정 마련, 재판중계를 위한 촬영 등 가이드라인 마련 등 검토할 것으로 예상
- 재판중계연구반의 연구 성과에 대하여 법원 내·외부 시각에서 검토하는 한편, 재판중계를 확대할지 여부, 확대가 필요하다면 그 구체적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기존 논의 경과 소개

- 「사법의 투명성과 개방성 확보를 위한 재판방송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2012,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용역)
 - 공개재판의 원칙과 재판방송
 - 재판방송에 대한 법정정책적 논의
 - 재판방송 관련 사례분석
 - 재판방송 실시방안
-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연구」(2017, 사법정책연구원)
 - 재판 중계방송의 개념 및 이론적 근거
 - 해외의 재판 중계방송

- 국내의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검토(필요성 검토 및 법정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재판 중계방송 실시방안
-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중계제도의 도입방안」 심포지엄(2017. 1. 20., 사법정책연구원과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공동주최)
 -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중계제도
 - 각국의 재판중계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 하급심 재판중계의 합리적 구현방안 모색
- 안건 회부 시 구체적인 연구·검토 필요 사항
 - 재판중계 확대 필요성에 관한 논의
 - 재판중계를 확대할 경우 대상 사건 및 범위
 - 재판중계를 확대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관계자 동의 필요 여부, 당사자 신청권 부여 여부 등)

■ ② 대국민 정보제공의 확대

- 논의 필요성
 - 각급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법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바,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나 제공방식 등이 적절한지를 사법서비스 수요자 입장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사법의 투명성과 개방성 확대를 위하여 사법수요자인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등을 선별하고, 효과적인 정보 제공방식에 대한 연구와 논의 필요함
- 기존 논의 경과
 - 사법정책연구원,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의 분석」(2015)
 - 법원 홈페이지 등의 이용 경험 유무, 법원 홈페이지 등 이용의 도움 정도 등 조사되어 있음
 - 기타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내부 검토보고서 등
- 안건 회부 시 구체적인 연구·검토 필요 사항
 - 해외 각국 법원 홈페이지, 국내 다른 헌법기관 등의 정보 제공 현황 분석
 - 대법원 및 각급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가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정보 등 연구·검토

(사무분담표, 기일정보, 재판진행 상황 등)

- 정보제공 방식의 개선 필요성 등 검토

■ ③ 대국민 법교육 강화

● 논의 필요성

-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는 제도개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제도나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 사법부가 들인 노력의 진정성 등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될 때 비로소 가능할 수 있음
- 사법교육은 법교육 자체가 의도하는 교육 목표 외에도 사법신뢰증진을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기존 논의 경과

- 법원행정처 내부 검토서, “사법 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안)”
- 사법정책연구원, 「판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알릴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2015)

● 안건 회부 시 구체적인 연구·검토 필요 사항

- 외국 법원의 법교육 현황
- 현재 사법부가 시행하고 있는 법교육 현황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검토
-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